KOSHA GUIDE G - 40 - 2012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2012.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대한기계학회 서상호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 제·개정 경과

- 2010년 8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Dangerous Goods in Cargo Transport Units, HSE, 1998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6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5월 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G - 40 - 2012

해상운송을 위한 포장, 운반 및 선적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포장 및 화물하역 근로자 등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상운송체계 전반의 안전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물운송체를 이용하여 해상 운송하는 화물의 포장, 운송 및 선적에 관련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화물운송체(Cargo Transport Unit)"란 육상용 탱크트레일러와 철도용 탱크트레일러를 말한다.
- (나) "컨테이너"란 화물 수송에 주로 쓰이는 쇠로 만들어진 큰 상자로서 주로 트레일러에 실려 운송된다.
- (다) "양립성"이란 서로 다른 화물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적재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G - 40 - 2012

4. 위험요소

선박에 선적된 화물은 이동 시나 악천후 속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부두 접안 시에 이러한 위험이 증가한다. 화물운송체 내의 불량한 포장상태는 해상과 육상 운송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1) 화물운송체 내의 부적절한 적재와 포장
- (2) 포장의 부정확한 표식
- (3) 동일 화물운송체에 동시에 환적 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
- (4) 미신고 위험물품 적재 및 부정확한 서류 작성
- (5) 화물운송체에 생략된 위험 표시
- (6)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위험 정보

5.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필수요소

- (1) 각 화물의 크기와 표식 등
- (2) 적절한 화물운송체의 선택
- (3) 해상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화물운송체 내 적절한 포장
- (4) 화물운송체의 정확한 표식
- (5) 평시 및 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처리를 위해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 포장 확인서 등의 적절한 문서
- (6) 위험물질의 경우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G - 40 - 2012

6. 포장관계자와 포장회사의 책무

6.1 포장관계자

포장관계자는 화물운송체 내 화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장에 대한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훈련하고 감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포장화물의 동시 적재
- (2) 양립성이 낮은 물품의 분리
- (3) 포장화물의 하중 분산방법
- (4) 화물의 적재 시 고정방법에 관한 사항

6.2 포장회사의 책무

- (1) 모든 포장방법은 적절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험 표식이 있어야 하고, 양호 한 포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화물운송체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3) 포장관계자가 포장한 상품이 화물운송체에서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해야 한다.

7. 선적관계자의 책무

(1) 일단 선적이 완료되고 컨테이너 봉인 확인서 또는 운송신고서가 발행되면 선적관계자 또는 적송인은 화물운송체를 하역할 항구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선적관계자는 화물운송업자, 통합관리자, 제조자, 수출업자 등이 될 수 있다.

G - 40 - 2012

- (2) 화물운송체와 그 내용물은 해상운송 전에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3) 항구까지 화물운송체를 운송하는 운송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정보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적관계자가 그 소유자이거나 컨테이너 임차인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 (4) 화물운송체 운송관계자는 화물의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는 물론 도로 및 철 도운송을 위한 적절한 규정도 숙지하여야 한다.
- (5) 선적관계자 혹은 적송인은 선박소유자에게 컨테이너 봉인증명서, 운송신고서, 서명된 위험물품 신고서 및 해양오염 신고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6) 선적관계자는 화물운송체가 적절히 표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화물운송대리인

화물운송대리인은 운송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대개 화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관련 서류를 처리한다. 또한 포장하는 곳에서 항구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송인 역할도 한다.

9. 운송관계자

운송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운송관계자이지만, 때로는 철도화물 운송관계자, 통합관리자 또는 해운회사가 될 수도 있다. 화주 자신이 운송인이 될 수도 있다.

- (1) 운송관계자는 화물운송의 목적지 또는 운송지 명칭, 화물 번호, 화물의 양과 무게, 화물의 분류사항 및 기타 항만관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 (2) 화물 컨테이너는 정보 표시를 위해 안내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3) 차량 운전자는 차량 운송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G - 40 - 2012

자는 정보 숙지와 더불어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